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2668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21. 4. 13.

판결 선고2021. 5.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719,055원과 그중 128,937,125원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2020. 10.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16. 접수 제125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회사는 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아래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기한 및 보증금액이 2020. 6. 11. 및 127,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018. 6. 11.	D은행	E	2019. 6. 11.	150,000,000원(150,000,000원)	
--------------	-----	---	--------------	----------------------------	--

나. 이 사건 보증약정 중 구상금채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회사가 주채무 이행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고회사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보증한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및 위 사항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피고회사는 이의 없이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2) 피고회사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대출금을 D은행에게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원고가 채권자인 D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한다.

다. D은행은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보증부대출을 받은 후 2020. 4. 29. 이후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2020. 7. 13.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0. 9. 21. D은행의 청구에
따라 128,937,1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피고회사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를 부담하는데, 670,33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111,600원을 대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에 피고회사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투명경영의무 위반 시에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의뢰인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약정인이 제2조에서 정한 투명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의뢰인 : 피고회사
2. 보증약정 : 2018. 6. 11.자 보증약정
3. 보증원금 : 150,000,000원
4. 보증기간 : 2018. 6. 11.부터 2019. 6. 11.까지

제2조(책임경영의무) 제1조의 보증약정에 대한 약정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의뢰인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제5조에서 정한 원고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와 사용금지

5.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또는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 원고의 사전동의

6. 제7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 준수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4조(책임경영의무위반 등)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조에 표시된 보증의 효력이 중단될 수 있으며, 또한 보증회수 및 보증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특히, 약정인은 책임경영의무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한 책임경영의무 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4. 제2조 제5호를 위반하는 경우

마.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책임경영약정 체결 이후로서 보증기간(변경 된 보증기간) 만료 전인 2020. 3. 18.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F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 12 ~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에 대하여)

2.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130,719,055원(= 대위변제금 128,937,125원 + 추가보증료 670,330원 + 법적절차비용 1,111,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회사의 현재 대표자인 F와 그 남편인 G이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등 형식적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원래 보증기간인 2019. 6. 11.까지 피고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았을 뿐, 대표이사 사임이나 주식변동 등이 있을 때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회사는 2017. 9. 6. 설립된 자본금 30,000,000원 규모의 회사이고, 피고 B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발행주식 6,000주 중 2,7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피고회사의 보증신청을 심사하면서 피고 B이 관련 업계에서 십수 년간의 경험과 노우하우를 갖춘 경영인으로서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긍정적 요소로 평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정부는 2018. 4.경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시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제도 또는 관행을 폐지하는 대신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대출부실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대출 또는 보증 신청을 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애는 대신 대표자에게 책임경영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 법인과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를 도입한 사실, ④ 피고 B은 책임경영의무 사항 및 의무기간,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규정한 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 ⑤ 피고회사는 당초 보증기간 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9. 6.경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하는 신청을 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보증기간이 2020. 6. 11.까지로 연장된 사실, ⑥ 피고 B이 서명·날인한 책임경영이행약정서에는 책임경영의무기간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보증서가 전액 해지될 때까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피고회사는 2020. 4. 29. 이후에는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그 직전인 2020. 3. 16. 여동생인 피고 C에게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0. 3. 18.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유효하게 체결된 책임경영약정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구상금 130,719,055원(= 대위변제금 128,937,125원 + 추가보증료 670,330원 + 법적절차비용 1,111,60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128,937,1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0.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20. 3.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여동생이다. 피고 C는 피고 B이 2015년 이 사건 주택을 280,000,000원에 매수할 당시 피고 B에게 매수자금 일부를 빌려준 적이 있었다. 피고 B은 2020. 3. 11.경 이 사건 주택을 300,000,000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매매대금 중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주택매수자금 관련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의 1, 2, 을 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항의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책임경영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시점인 2020. 3. 1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피고 B과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 C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피고 B과 피고 C의 관계, 피고 B의 이 사건 주택 처분 시기 및 경위,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차용증, 금전거래내역

등 증거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종열

별지